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O B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797호

의 안 명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의 결 일 2022. 11. 21.

주 문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21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김태규

위원 김기표

위원 박계옥

위원 박상희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묵

위원 송현주

위원 홍세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

[수난구명장비, 소화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음향신호기]

2022. 1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개요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장비 안전관리 강화	2
2. 재난현장에 활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보상 확대	9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보상한도액 기준 현실화	12
4.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안내범위 확대	18
III.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2
【참고】 관련 법령 등	23



I. 추진개요

-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
 -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추진배경

- 국민 일상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최우선적 책무

※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 '22.8.17.)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안전 관련 민원 및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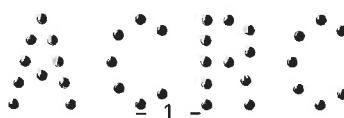
- 수난구명장비 안전기준 보완 요청, 소화기 활용 보상확대,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한도액 현실화 등 생활안전 분야 과제 발굴
- 일상 속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이 제안한 개선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국민 제시 안전 (예시)】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조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것일까요?” ('22.6월)
-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횡단보도 길이 정보를 추가 안내하면 어떨까요?” ('22.5월)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보상한도액은 20년 넘게 제자리” ('20.5월)

□ 추진경과

- '22. 8월 ~ 9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2. 10월 ~ 11월 기관협의 및 안전상정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장비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 현 황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수상에서 사고 등으로 인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
- (구성) 인명구조장비함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
 - ※ 필요 시 기타 장비(투척용 로프 가방, 구조봉 등) 추가 배치 가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사진>

- 17개 시·도에 총 9,768개 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 중 ('19.10월 기준)
- ※ (설치장소) 호수(저수지) 4,816개(49.3%), 하천 2,664개(27.3%), 해안 1,724개(17.6%), 계곡 368개(3.8%), 기타 196개(2.0%)
- ※ (설치주체) 농어촌공사 4,505개, 지자체 3,889개, 소방서 1,164개, 기타 210개 등

< 시·도별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현황 (단위: 개) >



* 출처 : 수난사고대비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방안('19.10월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 (관련 규정)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표준안)」

- 관리부실 등 문제로 부처 합동*으로 내수면 및 연안 인근에 설치된 모든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관리 기준(매뉴얼) 마련 및 배포('19년)

*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 한국농어촌공사 등) 및 지자체

-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표준안을 바탕으로 매년 인명구조장비함을 관리하고, 소방청·해양경찰청은 별도 규정(훈령)을 마련하여 운영

구 분	규칙명	비고
소방청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훈령

□ 문제점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구명장비의 임의적 비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성인 평균 체중기준에도 미달되는 구명조끼(착용가능체중 35~50kg)가 비치되어 있어 구조자의 2차 사고 발생 우려 등 민원 발생

※ 구조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출하는 등 구조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조끼를 사용하도록 비치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으나, 구명조끼 비치시 착용 체중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구명조끼는 성인 평균 체중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50kg이하만 착용가능한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음 ('22.6월 국민신문고)
- 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대부분 부력보조복임. 일반적인 구명조끼와 비교해 부력이 낮아 부력 보조복에 기재된 착용 체중을 준수해서 이용해야함. 또한 부력보조복의 경우, 안전기준에 따라 30kg미만자는 사용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 등이 없음. 또한 착용체중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최소 부력만 표시된 구명조끼도 있어 착용가능 체중 정보를 알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함 ('22.5월 국민신문고)

- 구명조끼는 용도·부력 등에 따라 안전 확인을 받아 구분되어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 등이 미흡하여 설치·교체 시에는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는 실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분류되며,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

< 구명조끼 용도 및 기능 구분 >

구 분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용도	스포츠 및 레저활동 시 익사 방지 등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 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형태의 제품으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용이 가능하며 A/B형으로 구분 (A형)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 (B형)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	- 스포츠용 구명복에 비해 부피와 부력이 작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시설이 인접해있는 조건에서 사용 -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착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예시) 착용자가 위험상태에서 수영을 하여 빠져나오거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 등																																						
기능 등	-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음 - 머리 뒤를 받쳐 주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 역반사체, 호루라기 등 안전용구 의무적 장착	- 회전기능이 없으며, 부력이 낮아 수영 및 구조활용이 용이함 - 체중 30kg이하 사용 금지 - 역반사체, 호루라기 등 안전용구 장착의무 없음																																						
최소 부력 기준	<table><tr><th rowspan="2">착용자 체중(kg)</th><th colspan="2">최소부력(N)</th></tr><tr><th>A형</th><th>B형</th></tr><tr><td>20이하</td><td>30</td><td>45</td></tr><tr><td>20초과 30이하</td><td>40</td><td>60</td></tr><tr><td>30초과 40이하</td><td>50</td><td>75</td></tr><tr><td>40초과 50이하</td><td>60</td><td>90</td></tr><tr><td>50초과 60이하</td><td>70</td><td>110</td></tr><tr><td>60초과 70이하</td><td>80</td><td>130</td></tr><tr><td>70초과</td><td>100</td><td>150</td></tr></table>	착용자 체중(kg)	최소부력(N)		A형	B형	20이하	30	45	20초과 30이하	40	60	30초과 40이하	50	75	40초과 50이하	60	90	50초과 60이하	70	110	60초과 70이하	80	130	70초과	100	150	<table><tr><th>착용자 체중(kg)</th><th>부력보조복의 최소부력(N)</th></tr><tr><td>30초과 40이하</td><td>35</td></tr><tr><td>40초과 50이하</td><td>40</td></tr><tr><td>50초과 60이하</td><td>40</td></tr><tr><td>60초과 70이하</td><td>45</td></tr><tr><td>70초과</td><td>50</td></tr></table>	착용자 체중(kg)	부력보조복의 최소부력(N)	30초과 40이하	35	40초과 50이하	40	50초과 60이하	40	60초과 70이하	45	70초과	50
착용자 체중(kg)	최소부력(N)																																							
	A형	B형																																						
20이하	30	45																																						
20초과 30이하	40	60																																						
30초과 40이하	50	75																																						
40초과 50이하	60	90																																						
50초과 60이하	70	110																																						
60초과 70이하	80	130																																						
70초과	100	150																																						
착용자 체중(kg)	부력보조복의 최소부력(N)																																							
30초과 40이하	35																																							
40초과 50이하	40																																							
50초과 60이하	40																																							
60초과 70이하	45																																							
70초과	50																																							

* 보호시설: 이용객 수 및 규모에 적합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시설 및 장소

-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바닷가 등 연안 지역 수난인명구조함의 경우, 비치되는 구명조끼 개수 외에 별도 세부기준 부재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해양경찰청 훈령)】

제19조(인명구조장비함) ① 인명구조장비함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 비치해야 할 인명구조장비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별표2] 안전관리시설물 제작방법 등

3. 인명구조장비함 장비 비치 기준

구분		비치 기준	비고
구명조끼		1개 이상	수량만 표기 세부기준 부재

- 소방청 등의 경우, 구명조끼의 기본규격 등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구명복의 종류·최소 부력 기준 등 세부기준 미흡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규정(소방청 훈령)】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

구분	형 상	세부내용	비고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4. 한쪽 방향으로만 뜨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명조끼 종류, 최소부력기준 등 세부기준 미흡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구조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안내 미흡

- 구명조끼 제원(착용 적합 사이즈·체중 등),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제품에만 기재되어 있어, 위급 상황에서 인지가 어려움
- 구조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가능 체중초과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장비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2차 사고 발생 등 우려

※ 구명조끼는 용도 및 착용자 체중별로 최소 부력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 적합하게 착용해야 물속에서 부양 등 최소 안전 유지 등 가능



○ 대다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는 구조장비 사용방법 등과 관련한 간단한 안내문구 등만 부착되어있는 실정

- 사용방법 안내문을 외부에 그림문자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만 부착되어 있고 표준안 등이 부재하여 제각각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규정(소방청 훈령)】

-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 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긴급상황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구조장비 이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표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견 제기

- 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구명조끼 안쪽에 착용체중 정보 등 제원이 안내되어 있으나, 인명구조함 안에 있는 다른 구조용품에 가려져 착용체중 정보가 잘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지 않아도 기재된 착용체중정보 글씨가 너무 작아 착용 체중 정보를 확인하기 사실상 어려움. 안내 문구만 보고 이용자 체중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사용 시, 구명조끼 착용체중 초과나 미달로 인해, 2차 인명사고가 우려됨 (22.5월 국민신문고)
- 인명구조함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부력보조복'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하며,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구명조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가 구명조끼 안쪽에만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알기 어려움. 인명구조함 장비 외부에는 익수사고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어 착용장비에 대한 안내 등 문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2.6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4. 12.)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명장비 세부 기준 마련

- 구명조끼·구명튜브 등 성인 평균 체중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최소 부력기준, 종류 등 구조장비 세부 규격 기준 보완

※ 해변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부 규격 기준을 마련하되, 향후 수난인명 구조장비함 점검·보수시 임의적으로 비치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에 명시

⇒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지침(표준안)」 개정 (행정안전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규정」 개정 (소방청)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개정 (해양경찰청)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인명구조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기재
-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 사용 시 제품의 제원, 주의사항 등을 인지하고 구조활동에 활용하도록 외부에 안내 문구 등 명시
 - 구조장비 사용방법(그림문자) 및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지자체 등에서 외부에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마련

<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선 안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지침(표준안)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 또는 위험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명, 연락처 2. 긴급 신고번호 3. 사용방법 안내문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내부 또는 외부에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지침(표준안)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 또는 위험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명, 연락처 2. 긴급 신고번호 3. 사용방법 안내문 및 사용 주의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 및 사용 주의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내부 또는 외부에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본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 [별표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문 기본 규격 신설

※ 개선안 문구 등은 예시일 뿐이며 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

- ⇒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지침(표준안)」 개정 (행정안전부)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규정」 개정 (소방청)
-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개정 (해양경찰청)

※ 행정안전부에서는 변경된 표준안을 지자체·관련 기관(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통보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현 황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 화재진압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 등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활동* 명령 가능

* (소방활동)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 이로 인해 사망·부상 등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고, 복구를 위한 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 수리 비용 등 보상

【소방기본법(소방청)】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생략)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생략)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명령 외에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동원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등을 마련하여 손실 지원

□ 문제점

- 화재 초기 진압 등을 위해 주변 상가 등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재구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거절 사례 발생
-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해 자발적으로 본인 자원을 활용하여 오히려 손실만 보았다는 민원 유발

- 지나가던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 화재가 발생한 장면을 목격하고 인근 상가로 달려가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청했지만, 망설이던 주인은 소화기를 가져가면 또 구매해야한다는 사유로 거절함. 다른 가게에서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한 시민은 버려진 빗자루로 초기 화재를 진압함. 화재진압 소화기 보상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의 보상제도 확산이 필요함 (KBS보도, '21.1월)
-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인의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 4개를 사용하여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했지만, 화재진압 후 소방서에서는 좋은 일했다고 생각하라는 말만하고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화재진압에 힘썼는데 손해만 보게 되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음. 소방서의 일처리 개선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2.3월)

- 향후 소극적 대처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피해·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문화 위축
- 이에 최근 대다수의 지자체는 적극적 초동대처를 유도하고, 민간 자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 일부 지자체(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전히 관련 조례 미제정
-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지자체 관련 조례 보유, 2개 지자체는 조례 미보유

< 지자체별 관련 조례 현황 >

지역	조례명	일자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5-14	제정
2 부산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5	일부 개정
3 대구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2018-10-30	제정

지역	조례명	일자	비고
4 인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1-12	제정
5 광주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2021-04-20	제정
6 대전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2021-04-09	일부 개정
7 울산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8-06	일부 개정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2021-04-15	일부 개정
9 경기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8-07	제정
10 강원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6-30	일부 개정
11 충북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2017-09-29	제정
12 충남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0	제정
13 전남	전라남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27	제정
14 경북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23	제정
15 경남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30	일부 개정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3. 12.)

- 소방·재난 현장에 자발적으로 활용된 민간자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

참고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행정안전부]

□ 현 황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의 실내·실외의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별표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휴게시설,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주택단지, 대규모 점포, 학교, 종교시설, 야영시설,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

- 전체 78,813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운영 중이며, 종류별로는 주택단지 놀이터 41,352개, 도시공원 놀이터 11,262개, 어린이집 놀이터 8,201개, 유치원 놀이터 7,529개, 학교 6,680개 순

< 어린이 놀이시설 종류별 현황 >

구분	주택 단지	도시 공원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	식품 접객 업소	놀이 제공 영업소	아동 복지 시설	종교 시설	주상 복합	합계
개수	41,352	11,262	8,201	7,529	6,680	1,232	919	376	305	257	78,813
구분	야영장	자연 휴양림	학원	대규모 점포	박물관	목욕장 업소	하천	공공 도서관	도로 휴게 시설	의료 기관	
개수	120	107	95	82	68	63	61	39	34	31	

*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22.11.2 기준

- (보험 가입)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 의무가입 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문제점

-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 보상한도액

-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과 다른 법령에 의무가입이 규정된 유사한 보험* 간 보상한도액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제기

* 화재손해배상 책임보험(화재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 손해보험(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재난취약시설보험(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 법령별 보상한도액 현황 >

구분 (부상, 후유장애 등급 및 유형은 일부 기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화재보험법 시행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재난안전법 시행령 동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사망		8,000 만원	1억 5,000 만원	1억 5천만원	1억
부상	1급 고도의 뇌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 등	1,500 만원	3,000 만원	3천만원	2,000 만원
	2급 위팔뼈 분쇄성 골절 등	800 만원	1,500 만원	1,500만원	1,000 만원
	3급 위팔뼈목 골절 등		1,200 만원	1,200만원	
	4급 넓적다리뼈 관절용기 골절 등	700 만원	1,000 만원	1,000만원	900 만원
후유장애	1급 두 눈이 실명된사람 등	8,000 만원	1억 5,000 만원	1억 5,000 만원	1억
	2급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7,200 만원	1억 3,500 만원	1억 3,500 만원	9,000 만원
	3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	6,400 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8,000 만원

※ 등급에 따른 부상·후유장애 유형은 대체로 동일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경우 일부 상이

- 다른 법령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법 제정(07년) 이후 개정이 전무한 실정

※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999~2002년 자동차손배법·화재보험법 수준

< 법령별 보상한도액 기준 변경 현황 >

구분	개정 시기	유형별 금액		
		사망	부상 1등급	후유장애 1등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2007.12.7.(법 제정) ~ 현재	8,000만원	1,500만원	8,000만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7.06.13. 개정	3,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2000.12.30. 개정	6,000만원	1,500만원	6,000만원
	2002.12.05. 개정	8,000만원	1,500만원	8,000만원
	2017.10.17.~현재	1억 5000만원	3,000만원	1억5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999.6.30. 개정	8,000만원	1,500만원	8,000만원
	2004.2.21. 개정	1억원	2,000만원	1억원
	2014.12.30. ~ 현재	1억 5000만원	3,000만원	1억5천만원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중대사고(사망, 골절,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 부상 등)는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280건 이상 발생

※ 중대사고 발생현황: ('17) 322건→('18) 286건→('19) 404건→('20)181건→('21)210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內臟)의 손상

<어린이놀이시설 지역별 중대사고 발생현황('16~'21년)>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338	20	17	9	14	5	6	3	1	137	22	14	8	7	3	9	42	20
2017	322	15	56	13	12	1	0	7	2	150	11	4	8	6	0	13	11	13
2018	286	6	59	5	5	1	2	7	12	151	3	2	9	4	1	8	7	4
2019	404	19	64	9	11	1	2	2	27	189	8	15	6	8	2	16	13	12
2020	181	13	14	6	2	1	3	1	10	72	3	5	3	2	9	11	21	5
2021	210	8	31	6	5	0	4	1	9	65	11	4	12	3	6	13	21	11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결과, 행정안전부 자료)

- 중대사고 유형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 유형에서 동일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보험 간 보상한도액 차이 발생

※ (유형별) 골절 178건(85%) > 기타 9건(4%) > 신경/근육/힘줄손상 7건(3%) > 치아 손상 6건(3%) > 출혈 4건(2%) > 베인상처/열상 2건(1%) = 타박상 등 2건(1%) = 내장 손상 2건(1%) 순 ('21년 기준)

※ (손상부위별) 팔/손 부위 141명(67%) > 다리/발 21명(10%) > 기타 15명(7%) > 얼굴 9명(4%) = 가슴/등 9명(4%) = 머리/목 9명(4%) > 치아 6명(3%) 순 ('21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보상한도액 차이 비교>

구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화재보험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야영장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부상 등급	부상 내용			
2급	위팔뼈 분쇄성 골절 무릎관절 탈구 등	8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급	발뒤꿈치뼈 골절 위팔뼈 몸통 골절 아킬레스힘줄 파열 등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8급	어깨뼈/종아리뼈 골절 얼굴부위 찢김 상처 등	180만원	300만원	240만원
9급	손바닥뼈/손목/발목뼈/ 발바닥뼈 골절 발목관절 뱀 등	180만원	240만원	240만원
11급	손가락뼈/발가락뼈 골절 코뼈 골절/ 뇌진탕 등	120만원	160만원	160만원

※ 부상등급별 부상유형은 대체로 동일하나, 일부 세부 부상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이에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보험 가입 시 자체적으로 보상 한도액을 상향 (8천만원 → 1억원) 하여 가입이 이뤄지는 실정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어린이놀이시설 대인 (어린이놀이시설 대인배상 인당 보상한도)	KRW	1억
어린이놀이시설 대인 (어린이놀이시설배상 대인 자기부담금)	KRW	10만

○ 중대사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등을 포함하여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1천 건 이상*

-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사고 외에는 보고의무가 없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해정보 분석현황에 따름

-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 ('19년) 1,736건 → ('20년) 1,176건 → ('21년) 1,164건

-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22.6.21.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사고 발생빈도가 잦음에 따라 보험 청구와 배상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상한도액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의견도 제기

- 2007년에 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보상한도액 기준은 제정 이후 한번도 조정하지 않고 있어, 무려 20년도 넘는 1999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기준과 동일함. 다른 법률의 보험 보상액은 상향 조정되어, 어린이놀이시설 보상액과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 보상한도액 상향에 대한 국민 의견 제시

<국민생각함 안전 게시물(20.5월)>

- 놀이터 이용 중 아이가 시설물에 부딪혀 다쳐서 치료 중에 있음. 어린이놀이시설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음 ('21.4월 국민신문고 민원)
- 놀이터 그네 앞에서 자녀가 크게 넘어져 찰과상 및 치아파절이 일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음. 넘어진 원인은 놀이터 내 보도블럭 인도에 모래 및 흙이 적체되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것으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22.9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4. 12.)

- 다른 생활안전 사고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물가상승분 반영 등 보상액 현실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상향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개정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선안		
【별표7】 보험의 보상한도액			【별표7】 보험의 보상한도액		
1. 사망의 경우 :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1. 사망의 경우 : 1억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부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1천500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생략)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생략)
2급	8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생략)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생략)
3급	8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생략)	3급	1,200만원	2. 위팔뼈목 골절 (생략)
(생략)			(생략)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애가 생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애가 생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8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생략)	1급	1억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생략)
2급	7천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생략)	2급	9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생략)
3급	6천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생략)	3급	8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생략)
(생략)			(생략)		

※ 개선안은 예시일 뿐이며, 구체적 보상한도 상향 금액은 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

[경찰청]

□ 현 황

- (시각장애인) 일반적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문제로 시력이 현저히 낮거나 시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251,620명*에 달함

*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 통계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안내하는 보행안전시설물

- 버튼을 작동하면 보행신호체계에 따라 신호안내 음향을 발생하고, 맞은편 신호기에서도 소리를 발생시켜 쉽게 횡단하도록 안내

※ '21년 기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117,484개 중 음향신호기 39,811개(34%) 설치"

**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 보도자료 내 시도별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 자료(경찰청, 전국 지자체 자료 재편집/21.10월)



<음향신호기 사진>

- (관련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고시)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경찰청 고시)**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에 대한 것으로... (생략)

- (설치기준) 공공건물·전철·터미널 주변,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경찰청 고시)**

3. 설치기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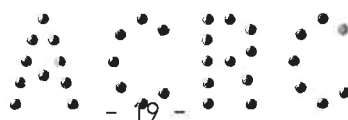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 **문제점**

- 음향신호기 작동 시 음성안내 내용에 '신호상태'만 안내되고 '횡단거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사고 위험 노출

-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반대편 인도까지의 횡단거리를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횡단거리에 대한 안내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 음성전달 내용에 ○○방향 횡단보도 및 신호상태(녹색불, 점멸신호)만 필수사항으로 규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규격서 (경찰청 고시)

(7) 신호 안내음향 내용

- ① 보행 적색 시에 신호 안내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표 11>의 음향내용이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표 11>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신호상태	적색	녹색(Walk)	녹색점멸(Ped. Clear)	
음향내용	예고음	시작음	점멸음	끝음
멜로디	없음	딩동댕	없음	없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방향 횡단 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없음
바탕음	없음	○녹색 및 녹색점멸 신호시간 동안 바탕음 계속 (단, 메시지 방송시간 동안 바탕음 정지) ○바탕음 발생시간 : 총 주기 2초, 발생시간 0.7초 ○바탕음 구분 - 귀뚜라미(동서방향 가로) - 새소리(Chirp-Chirp, 남북방향 가로)		

※ 음성전달은 좌측은 남성, 우측 및 단일로는 여성 목소리로 한다.

4. 선택사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본 규격서 내용 외에 지역여건에 따라 아래 기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

- 가. 주위 소음정도 등 도로환경에 따라 신호음향의 크기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기능
- 나. 위치 안내음향 메시지 뒤에 현재의 신호상태와 도로의 넓이(차로수)에 대한 안내기능
- 다. 시각장애인이 리모콘(송신기)을 떨어뜨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음향 발생기능

- 횡단보도 보행거리가 넓은 경우 반대편 음향신호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횡단 이전 시각장애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보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자문의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내 음향에서 횡단보도 폭을 전달하는 것은 안전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길이와 차로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더 쉽게 길이 체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2.9월)

- 음향신호기 추가 설치 등 큰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기존 설치된 시설물에 일부 문구 추가만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 의견 제기

■ 음향신호기의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하는지 알기 어려움. 자주 건너지 않는 횡단보도, 초행길의 경우에는 얼마나 걸어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지 불안감과 불편이 더욱 큼

■ 5~6글자의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짧은 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됨. 모든 횡단보도 적용이 어렵다면, 6차선 이상으로 횡단보도 너비가 넓은 곳 등에 선택 적용 등의 방법이 있음.

□ 개선방안 (정책제안)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음향신호기 음성안내 내용에 ‘횡단거리’ 관련 내용을 필수로 안내하는 방향 중·장기적 검토
-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고시) 개정 검토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선안														
<표11>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table><tr><th>신호상태</th><th>적색</th><th>녹색</th></tr><tr><td>음성 전달 (메세지) 내용</td><td>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td><td>OO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td></tr></table>			신호상태	적색	녹색	음성 전달 (메세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OO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표11>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table><tr><th>신호상태</th><th>적색</th><th>녹색</th></tr><tr><td>음성 전달 (메세지) 내용</td><td>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 폭(길이/너비)은 00m(0차선) 입니다.</td><td>OO방향 폭(길이/너비) 00m(0차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td></tr></table>			신호상태	적색	녹색	음성 전달 (메세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 폭(길이/너비)은 00m(0차선) 입니다.	OO방향 폭(길이/너비) 00m(0차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신호상태	적색	녹색															
음성 전달 (메세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OO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신호상태	적색	녹색															
음성 전달 (메세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 방향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 폭(길이/너비)은 00m(0차선) 입니다.	OO방향 폭(길이/너비) 00m(0차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 적색신호 또는 녹색신호 안내, 안내 문구, 횡단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인 횡단보도 순차 적용 등 세부사항 등은 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 검토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장비 안전관리 강화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 비치되는 구명장비 세부 규격 기준 보완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외부에 인명구조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기재 ○ 외부에 부착되는 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문 표준안 마련 ⇒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지침(표준안)」 개정 (행정안전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 규정」 개정 (소방청)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해양경찰청)	'24.12월
2. 재난현장에 활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보상 확대	○ 소방·재난 현장에 자발적으로 활용된 민간자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23.12월
3. 어린이놀이 시설 보험 보상한도액 기준 현실화	○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물가상승분 반영 등 보상액 현실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상향 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개정 (행정안전부)	'24.12월
4.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안내범위 확대	○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음향신호기 음향안내 내용에 '횡단거리' 관련 내용을 필수로 안내하도록 규정 ⇒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 (경찰청)	정책제안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소방청 훈령)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1. 구명조끼 : 1개 이상
2. 구명튜브 : 1개 이상
3. 구명줄 : 1개 이상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
 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할 것
 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
 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
 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
 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
- 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 또는 위험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2. 긴급 신고번호
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별표1]

인명구조장비 기본규격 (제5조제3항 관련)

장비명	형 상	세부내용
구명조끼		1. 외형은 조끼형태로 반사 성능이 있는 재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기주입 장치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물에 24시간 이상 잠긴 후에도 95% 부력 유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착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고정방식은 매듭을 묶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정방식을 가져야 한다. 4. 한쪽 방향으로만 또는 안쪽에서 밖으로 명백히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 들더라도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재, 무게, 부력 성능, 착용 적합 사이즈 등의 제원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구명튜브		1. 외형은 튜브형태로 외부 공기 주입 없이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 부력 성능을 외면에 표기할 것 2. 반사 성능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염분 및 습기에 의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4. 구명줄을 쉽게 결속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구명튜브를 던지거나 조난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측면에는 끈이 달려 있어야 한다.
구명줄		1. 가볍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2. 수상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색상이어야 한다. 3. 두께는 6mm 이상,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장강도는 1,000kg 이상 이어야 한다.

<비고>

가. 지역 특성, 사고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위 규격을 포함하여 세부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치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 형상에 관련 된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격과 관련이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보험의 보상한도액(제13조제4항 관련)

1. 사망의 경우 :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1천500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밑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뇌에 충격이 가해져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축삭이 손상되어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괴사상처 등 물렁조직(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팔다리와 몸통의 물렁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위팔뼈목 골절과 위팔뼈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 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자뼈몸통(척골 간부) 골절과 노뼈머리(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 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8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염기 골절과 팔꿈치관절(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손목 주상골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은 수술의 수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정강이뼈 관절염기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족근골) 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발목 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 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타박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쪽 안구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모양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넓적다리뼈 관절염기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염기(면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염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술개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의 힘줄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염기 전위(뼈가 어긋남)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피사상처 등으로 물렁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상해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7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개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발뒤꿈치뼈(종족골) 골절 4. 위팔뼈몸통 골절 5. 노뼈 면쪽부위[콜리스 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뺏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관절면, 노뼈 면쪽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늑골)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상이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림프관(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이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목말뼈 골절(목말뼈목은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다리의 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치골)·궁둥뼈(좌골)·엉덩뼈(장골)·엉치뼈(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 림프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염기 찢김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400만원	1. 소아의 팔(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염기 굽힘 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뼈가 있는 자리(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치골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에 필요한 상해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위팔뼈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어깨 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내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머리부위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위턱뼈(상악골), 아래턱뼈(하악골), 잇몸뼈(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80만원	1. 척주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근절 6. 손목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발꿈치뼈(종골)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염좌(뺨), 정강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 스힘줄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 절과 혈액가슴중, 공기가슴중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주체 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 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손목 간 관절 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또는 12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손가락뼈 사이(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염좌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뽕근힘줄) 파열 7. 9개 또는 10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2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뼈 골절·탈구 및 염좌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4개 또는 5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60만원	1.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2개 또는 3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6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 고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애가 생긴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보험금액	상해내용
1급	8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천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천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천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천8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4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천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2천4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천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삭제 <2019. 5. 7.>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또는 6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또는 4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삭제 <2019. 5. 7.>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7.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2백만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가. 보행우선구역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 횡단 등을 위해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음향신호기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 제3호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보행 경로에 기반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보행자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접근하여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 본 입 니 다 .

2022. 11. 22.

국 민 권 의 위 원



A C R C